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679 발의연월일: 2025. 4. 9.

발 의 자:정동만・이인선・김선교

김기현 · 강민국 · 김성원

박상웅 · 임이자 · 엄태영

박성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위원회 위원에 대한 전문적인 보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시·도의회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직원은 시·도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인 교육 감이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에 관여하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 간의 견제와 균형에도 맞지 않고,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규정한 2021년 의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에도 맞지 않음.

이에 시·도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은 모두 시·도의회 의장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및 자율성 확보를 통하여지방자치단체 내 의회와 집행부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3항).

법률 제 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제3항 중 "시·도의회의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감이"를 "시· 도의회의 의장이"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시·도의회 사무직원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시·도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명에 관하여 교육감이 한 행위는 제 29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의회의 의장이 한 행위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의3(시·도의회의 교육·	제29조의3(시·도의회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의 지원) ①	학예에 관한 사무의 지원) ①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두는 사무직	③		
원은 <u>시·도의회의장의 추천에</u>	<u>시·도의회의 의장이</u>		
<u>따라 교육감이</u> 임명한다.			